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1. 실태조사 : 평일, 토요일 및 일요일에 대한 최근 1개월간의 매출액 자료를 대규모점포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매출액을 조사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점포등이 매출액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,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등의 대표에게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에게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
2. 의견청취 :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와 중소유통기업 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의 대상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(현행 합의안)	수정안
<p>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.</p> <p>①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p> <p>1.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매출액 조사 : 평일, 토요일 및 일요일에 대한 최근 1개월간의 매출액을 대규모점포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매출액을 조사하여야 한다. 단, 대규모점포등으로부터 매출액자료 제출이 없을 시는 이 사항에 대한 조사는 생략할 수 있고,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자에게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에게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자와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대상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>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실태조사: 평일, 토요일 및 일요일에 대한 최근 1개월간의 매출액자료를 대규모점포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매출액을 조사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점포등이 매출액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,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에게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에게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 의견 청취: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의 대상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